

■ 공무원임용시험령 [별표 4] <개정 2025. 6. 2.>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(제7조제1항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등급	
		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•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•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)	9급 공개경쟁채용시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	3급 이상

비고: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(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):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
2.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: 제1차시험(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)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